

# 자연과학대학 장학위원회 규정

제정 1992. 9. 4.  
개정 1993. 3.  
1997. 12. 12.  
2000. 3. 10.  
2001. 3. 23.  
2007. 9. 14.  
2019. 12. 5.

제 1조 (목적) 서울대학교장학금 규정 제8조 ②항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과학대학에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함)를 둔다.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장단과 각 학부(과)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학생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행정실 주무자가 된다.

제 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계획
2. 장학금 배정
3. 장학금의 확대 방안
4. 기타 관련 사항

제 4조 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 5조 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19년 12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.

# 자연과학대학 학생포상 및 징계위원회 규정

제정 1992. 9. 4.  
개정 1993. 3.  
1997. 12. 12.  
2000. 3. 10.  
2001. 3. 23.  
2001. 12. 14.  
2007. 9. 14.  
2019. 12. 5.

제 1조(목적) 서울대학교학칙 제106조(포상), 제107조(징계)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자연과학대학의 학생 포상 및 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장단과, 학부(과)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학생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행정실 주무자가 된다.

제 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.

1. 학생 포상 대상자의 선정 기준 설정
2. 학생 징계의 심의 및 의결
3. 기타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
제 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징계 심의·의결의 상정 및 의결 주문은 학생부학장이 담당한다.

제 5조(포상의 종류)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최우수박사논문 포상(교무행정실 소관업무)
2. 특별 포상(학생행정실 소관업무):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특별한 선행이 있거나 학생자치 활동 등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특별 포상한다.

제 6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포상 및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